

채용 공고문 (게시용)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경력직원 채용공고

사람과 도시의 새로운 소통! 김포 지하철시대를 함께 열어갈 열정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 2. 20.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 및 인원 — 경력직 54명

구분	모집분야	직급	인원(명)	주요업무	자격요건	
계 (54명)		1~2급	12	-		
		3~4급	31			
		5급	11			
운영	경영지원 (5명)	1~2급	2	- 기획, 인사, 회계(세무), 구매, 전산 등	· 1~2급 : 직무관련 경력 15년(180개월) 이상	
		3~4급	2			
		5급	1			
	관제 (11명)	1~2급	3	- 종합관제, 열차운전		
		3~4급	5			
		5급	3			
기술	차량 (8명)	1~2급	2	- 전동차 정비 및 관리	· 3급 : 직무관련 경력 10년(120개월) 이상	
		3~4급	5			
		5급	1			
	신호/통신/전자 (13명)	1~2급	2	- 신호, 통신, 전자분야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 4급 : 직무관련 경력 5년(60개월) 이상
		3~4급	8			
		5급	3			
	전기/기계 (11명)	1~2급	2	- 전기, 기계분야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 5급 : 직무관련 경력 6개월 이상
		3~4급	7			
		5급	2			
	토목/궤도/건축 (6명)	1~2급	1	- 토목(궤도), 건축분야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3~4급	4			
		5급	1			

- ※ 「통섭형 인력운영」으로 경력, 자격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업무 배치 가능
- ※ 직급은 경력사항, 직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후 결정
- ※ 해당직급 모집인원 미달 시 그 인원만큼 다른 직급에서 채용(충원) 예정
- ※ 모집분야 및 직급 간 중복지원 불가
- ※ 근무형태는 업무분야와 추후 직급 등에 따라 통상일근 또는 교대(교번)근무 실시

2. 응시자격 및 요건

▣ 응시연령, 학력 및 거주지

- 응시연령 : 18세 이상('00.12.31. 이전 출생), 60세 이하('58.1.1. 이후 출생)
- 학력 및 거주지 : 별도 제한없음 ※ 영업구간 : 김포시 양촌읍(차량기지) ~ 김포공항역

▣ 자격 및 경력

- 관제분야는 공고일 현재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서」 소지하고, 관제업무 종사 가능자
- 전기분야는 「전기기사(경력 2년 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경력 4년 이상)」 이상 자
- '경영지원' 분야는 「일반(민간) 기업체」 근무경력을 아래와 같이 인정

적용대상 경력	적용률
• 종업원 200인 이상 일반 기업체 또는 상장업체	80%
• 종업원 200인 미만 30인 이상 일반 기업체	50%

▣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가능자

- 철도업무의 특성상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 ~ 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급여수준 — 2,500만원 ~ 5,000만원 내·외(성과급 미포함)

※ 직급과 업무분야 등에 따라 상이함

▣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전역 가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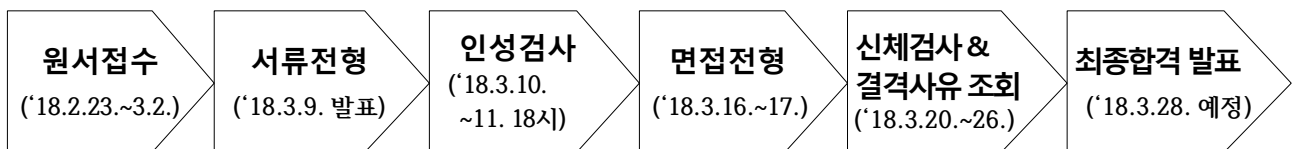
▣ 응시제한 — 붙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 (별첨)

▣ 가산특전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서류전형 합격자)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 (별첨)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3%(「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 불인정)
 - ※ 단,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가산점 부여
 - 무인경전철 건설·운영기관 근무경력자 또는 무인경전철 개통 준비업무 수행자, 무인경전철 시스템 국내·외 교육이수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 자격, 면허, 등록 및 제한사항은 「공고일 현재」 까지 취득·유효한 것에 한함

3. 채용절차 및 일정

-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별도 공지)
- 각 전형별 합격자, 안내문 등은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게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조정 시 별도 공지 및 통보 예정)
-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4. 입사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 접수기간 — '18.2.23. ~ 3.2. 18:00까지 / 8일간 (※ 공고기간 : '18.2.20.~3.2.)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에 한함

- 채용전용 홈페이지(<https://gimpogoldline.saramin.co.kr>)에서 입사지원서 및 경력기술서 작성
- 접수 마감일 시스템 장애 등을 대비해 가급적 마감일 전 지원(제출) 요망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확인 철저

< 유의사항 >

- ✓ 가산대상 자격, 경력 등은 지원서 마감일 이후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철저하게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전형

- ▣ **선발방법** — 평가항목 점수를 종합하여(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자격증 상위등급 보유자 > 연소자 순
 - 동점자 처리방법 외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결정(소수점 이하 절상)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3.9.(예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대상자

▣ 평가항목 및 배점, 주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만점

총점	경력점수	자격증	경력기술서	비고(서류전형 만점 대비 가점)
100점	30 (기본 10점)	30 (기본 10점)	40 (기본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3% • 취업지원대상자 : 10% 또는 5% • 무인경전철 분야 업무경험자 등 : 5%

※ 경력점수는 도시철도(철도, 경전철 포함) 관련 근무기간을 합산(공통사항)하되, 퇴사일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 주의(참고)사항

- ✓ 경력 및 자격증, 가산점수(해당자)는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무인경전철 관련 증빙서류' 등 반드시 제출
- ✓ 다수 자격증 보유 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단, 공고일 이전 취득하고 지원분야에 명시된 해당 자격증에 한하여 점수 부여)
- ✓ 관제분야 지원자는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서」 보유자만 지원 가능하고,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함
-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국토부 고시 제2017-945)으로 '철도운영 안전관리자' 자격증 점수 부여(기능사 수준)
 - ※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 (오입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단,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 관련법률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해당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단,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 관련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공고일 이전 등록(취득)한 것에 한함,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무인경전철 분야 업무경험자 등

- 무인경전철 건설·운영기관 근무자 또는 무인경전철 개통 준비업무 수행자
- 무인경전철 운영시스템 국내·외 교육 이수자

※ 해당기관(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허위작성 또는 미 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무인경전철 해당노선

-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인천2호선, 부산김해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부산4호선
- 김포도시철도, IAT(인천공항 내 셔틀라인), IAM(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6.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검사개요

- 일정 : '18.3.10. ~ 3.11. 18:00까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내용 : 성공적 업무수행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원만한 인성 소유여부 등 판단
- 방법 : 온라인 검사(210문항, 약 30분 소요)
 - ※ 인성검사는 전문기관이 대행
 - ※ 면접전형 시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검사수행 및 제출해야 함(미 수검자는 면접시험 대상 제외)

■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점수 미반영)

7.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수행자) 대상

■ 면접개요

- 일정 : '18.3.16. ~ 3.17. / 2일간(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내용 : 해당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 방법 : 조당 피면접자 5명 내·외 집단면접
 - ※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피면접자의 개인정보 등 평가위원 미제공)
- 선발 :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8.3.19. (예정)

■ 세부 선발방법

-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면접위원(3명) 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자격증 상위등급 보유자 > 연소자 순
 - ※ 이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참고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면접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10% 또는 5%(장애인은 3%) 가점 부여
- 무인경전철 분야 업무경험자 등에 대한 가점은 면접전형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면접전형 시 현장업무 수행 가능여부 판단

8.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전원 대상

■ 채용 신체검사 — '18.3.21. ~ 3.22. 10:00 ~ / 2일간

- 기관 및 비용 : 서울의료원 / 당사 부담
- 방법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 (별첨)
 - ※ 관제, 신호분야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 ※ 신체검사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반명함 사진 2장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결격사유 조회 — '18.3.20. ~ 3.26. / 7일간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면접전형 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출

9.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 발표 — '18.3.28.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단,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채용후보자 등록 — '18.3.29. ~ 3.30. / 2일간

- 등록기간 내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하되, 경력사항 등에 따라 직급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 ※ 예비합격자 규모(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함)

구 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5명 이하	6 ~ 10명	10명 초과
예비합격자	2명	3명	30% (소수점 반올림)


10.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 지원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단계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고, '18.4.1.부터 정상근무를 할 수 있어야 임용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입력사항 누락, 오입력,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서류전형, 면접전형에 가산되는 자격증, 취업지원 관련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당사 입사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임용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확인 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면직 처리)
-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가족관계, 학력, 사진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 응시자도 본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파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구직자 부담)
- 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공고 포털(<https://gimpogoldline.saramin.co.kr>)」을 통해 모든 안내사항 및 다음일정을 공지할 계획입니다.
 - ※ 문의사항은 「채용공고 포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채용담당자 : 02)6311-5049 / 5052
 - ※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로 김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개통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되고, 이후 운영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차기 운영사로 고용이 승계되며(협약사항),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직원 신분은 종료되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분(시기)	제출서류	비고
원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온라인(취업지원 포털) https://gimpogoldline.saramin.co.kr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1부(원본, 각 근무기관별) • 무인경전철 운영·건설·개통준비·교육이수 증빙서류 • 자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p>※ 주의사항 면까지 2페이지 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전역예정증명서(군 복무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분야 응시자는 필수 자격증(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병적 증명서” 별도 제출
채용후보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여성 합격자) • 증명사진 4장(최근 3개월 내 촬영본, 3×4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사진 뒷면에 성명, 응시번호 기재

2018년 2월 20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사장

임용 결격사유(응시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점수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분야	점수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 기술사 점수(3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18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 및 워드프로세서(15점)
경영 지원	<p>품질경영, 포장, 품질관리, 철도운송, 사무자동화, 전산회계, 전산회계운용사, 전산세무, 세무회계,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정보보안, 정보처리,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시스템응용,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교통, 도시계획, 지적,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대기관리, 대기환경,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전기안전, 폐기물처리, 화공안전, 환경</p> <p>※ 전산회계운용사의 경우 1급은 기사, 2급은 산업기사, 3급은 기능사 점수 부여</p>
관제, 차량, 신호, 통신, 전자, 전기, 기계	<p>품질관리, 품질경영, 사무자동화, 교통, 도시계획,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내선공사, 전산응용기계제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냉난방및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궤도장비정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금형, 금형제작, 사출금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재창호, 금속제련, 금속도장, 압연, 열처리, 판금제관, 주조, 용접, 특수용접, 원동기시공, 표면처리, 화공, 화공안전,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송배전설비, 변전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운송, 철도전기신호, 광학,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료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응용, 전자카드,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특수급무선통신사, 데이터통신설비, 가스, 고압가스취급, 가스산업,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전기안전, 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대기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자원개발,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포장, 환경, 에너지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화학분석, 지계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기능사’ 점수(18점) 부여</p>
토목, 궤도, 건축	<p>품질관리, 품질경영,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철도운송,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목공예, 목재창호, 가구제작,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건설재료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석공예,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철도, 철도토목, 측량,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사진, 조경, 교통, 도시계획, 산업안전, 배관, 건설기계, 지계차운전, 궤도장비정비, 자동차정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기능사’ 점수(18점) 부여</p>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기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구분	10% 가산	5% 가산
독립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제대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대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대 중 1인
고엽제 휴유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등 적용)

[별표] <개정 2011.9.29>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구강·인후기관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 가. 아래턱관절 강직(強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礙)

- 라. 동맥류
- 마. 유착성 심낭염
- 바. 관상동맥질환
-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 다. 재생불량성 빈혈
-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 2) 외상성 신경질환
- 3) 말초신경질환
-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관제·신호분야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 항목	불합격 기준	
	최초검사·특별검사	정기검사
가. 일반 결함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 2)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인 고혈압증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나. 코·구강·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만성 천식증,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마. 순환기 계통	1) 심부전증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p>전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동맥류 5)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6)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 7)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p>바. 소화기 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p>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나 간경변증</p>
<p>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성 신장염 2) 중증 요실금 3) 만성 신우염 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 고도의 요도협착 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신장염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p>아. 내분비 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3) 애디슨병 	<p>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 내분비질환, 대사질환(통풍 등)</p>

	<p>4)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p> <p>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p>	
<p>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p>	<p>1) 혈우병</p> <p>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p> <p>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p> <p>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p> <p>5) 진성적혈구 과다증</p> <p>6) 백혈병</p>	<p>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우병</p> <p>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p> <p>3)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재생불능성 빈혈</p> <p>4)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p> <p>5)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과다증</p> <p>6)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혈병</p>
<p>차. 신경 계통</p>	<p>1)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p> <p>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p> <p>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p> <p>4) 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p> <p>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p> <p>6)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p>	<p>1)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p> <p>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p> <p>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p> <p>4) 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p> <p>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p> <p>6)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p>

	<p>신경근 접합부 질환</p> <p>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p> <p>8)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p>	<p>경근 접합부 질환</p> <p>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p> <p>8)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p>
카. 사지	<p>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p> <p>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p> <p>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p>	<p>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p> <p>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p> <p>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p>
타. 귀	<p>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p>	<p>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p>
파. 눈	<p>1)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p> <p>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p>	<p>1)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p> <p>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p>하. 정신 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 지체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 지체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수면 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공지

1. 이 공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써,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응시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공고 포털」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포털 : <https://gimpogoldline.saramin.co.kr>
4. 당사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18년 월 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사장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18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